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0-23-111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년 4월 29일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

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분리할 것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5,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Ⅰ.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19.4.3.기준)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 균
매출액				
정보통신부문 매출액				

※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2 피심인은 서비스 등을 위한 홈페이지 ( )를 운영하면서 2019.4.3.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 정보 (유효회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Ci, Di,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한글 회사명, 대표자이름, 회사 주소,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건
(휴면회원)			건
총 계			건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3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출신고한 타사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중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2019. 7. 30. ~ 7. 31.)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4 **(접근권한 부여·말소)** 피심인은 쇼핑몰 관리자의 1:1문의 등 CS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쇼핑몰 관리자로부터 이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오픈마켓 아이디, 오픈마켓 비밀번호, 테스트 아이디, 테스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2019. 4. 11. 기준 748건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2019. 4. 12. 조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접근권한 416건을 변경·말소하고 382건의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별 취급자 수 >

※ 레벨 1~3의 접근권한은 쇼핑몰 관리자가 1:1문의를 통해 작성한 모든 정보(평문으로 된 오픈마켓 비밀번호 포함)를 열람하는 등 처리할 수 있으며, 레벨 1의 경우 접근권한을 생성·변경·말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5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을 부터 운영하면서 2019. 4. 12.까지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피심인은 자본금 원,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원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오픈소스 제품인 Iptable, ModSecurity, snorby 외 별도의 상용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PC 및 서버보안 , 웹 취약점 점검 , DDOS방어 프로그램 및 제품과 침해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지를 위해 자체 제작한 내부 보안관제 시스템 등을 구축·운용한 사실이 있다.

7 **(망분리)** 피심인은 쇼핑몰 관리자의 1:1문의 등 CS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접속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생성·변경 말소 등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 외부 인터넷망을 차단(논리적 또는 물리적 망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접근권한 생성·변경·말소 가능 권한자의 PC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화면 >

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8 피심인은 쇼핑몰 관리자의 1:1문의 등 CS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회사는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고객 정보(이메일, 연락처) 및 기타 상담 내용에 따라 계정 접속 정보, 환불 계좌정보 등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이용합니다. 회사는 상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고객 관리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CS업무 처리가 완료되어 이용 목적 완료된 첨부파일(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포함) 및 사업자 등록증,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화면 등)을 6개월간(2018. 10. 12.~2019. 4. 12.) 보관하고 파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9. 4. 12. 조사 당일에 첨부파일 49,383건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9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8. 19.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9. 2.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제2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제3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 고시 제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제2호)'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 등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완전한 접근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14 고시 제4조제5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적인 접근(인가되지 않은 자가 사용자계정 탈취, 자료유출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말함) 및 침해사고(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보안운영체제(Secure OS), 웹방화벽, 로그분석시스템, ACL(Access Control List)을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신규 위협 대응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규 위협 대응 및 정책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적용 및 운영·관리, 이상 행위 대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며, SOHO 등 소기업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방화벽, 침입방지, 웹방화벽 등)를 활용하거나 공개용(무료) S/W를 사용하여 해당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개용(무료) S/W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보안이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15 고시 제4조제6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파기 또는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한 개인정보취급자는 외부 인터넷망이 차단된 업무망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은 서로의 영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이나 논리적으로 망분리하여 차단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

16 **(접근권한 부여·말소)** 피심인이 쇼핑몰 관리자의 1:1문의 등 CS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접근권한 416건에 대해 즉시 변경·말소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17 **(접근권한 기록보관)**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을 부터 2019. 4. 12.까지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여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18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공개용(무료) S/W(오픈소스 제품인 Iptable, ModSecurity, snorby) 외 별도의 상용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19 **(망분리)**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고시 제4조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정보통신망

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

20 피심인이 쇼핑몰 관리자의 1:1문의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민원업무 처리가 완료된 49,393건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통제	§28①2호	§15②1호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말소하지 않은 행위(고시§4②)
	접근통제	§28①2호	§15②1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③)
	접근통제	§28①2호	§15②2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⑤)
	접근통제	§28①2호	§15②3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⑥)
	미파기	§29①	-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할 것 2)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3)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것 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인터넷망과 분리할 것

나.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21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태료 부과

22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2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

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이에 따라 조사 과정 중 법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26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Ⅵ. 조사결과 수사기관 이첩

27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8 피심인은 조사당시까지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49,383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해당되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Ⅶ. 결론

29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4월 29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